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이 개정(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7. 시행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제8조)
-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포상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관련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